



시간제 등록생 운영규칙

규정번호	3-3-14
제정일자	1999.08.01
개정일자	2020.03.01
개정번호	Ver.4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칙 제23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3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시간제 등록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간제등록생의 모집) ① 시간제 등록생은 매학기 별로 모집한다. 다만, 제1학기를 수강중인 등록생에 한하여 별도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학기의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학기 시간제 등록생을 제2학기에 무시험 선발할 경우에는 시간제 등록생 담당교수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.

제3조(학점 신청 기준) ① 시간제 등록생은 제1학기 및 제2학기에는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. <개정 2020.03.01.>

② 타 대학 또는 타 교육기관에 복수로 수강하는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연간 복수 수강 총학점은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등록금)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 학점당 등록금은 매 학년도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학위의 수여) ① 시간제 등록생으로 등록하여 본 대학의 각 학과 또는 학부내의 전공 이수학점이 50학점 이상이고 학점은행제에 의한 총취득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는 해당학과 또는 해당 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

② 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는 본 대학 교무위원회의 졸업사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6조(학점인정)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교내활동) ① 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에서의 학생 자치활동을 할 수 없다.

② 시간제 등록생에 대하여 본 대학의 전산시설 이용 및 도서관 임시열람증을 교부하여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간제 등록생이 전산ID 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대금을 징수하고 발급할 수 있다.

제8조(징계) 시간제 등록생이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
제9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